

2015. 06. 13 9급 서울시 공무원  
지방세법 해설\_김용민교수님

1. 정답 ③

〈휴면법인〉

- ① 「상법」에 따라 해산한 법인(이하 "해산법인"이라 한다)
- ② 「상법」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(이하 "해산간주법인"이라 한다)
- ③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에 따라 폐업한 법인(이하 "폐업법인"이라 한다)
- ④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「상법」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
- ⑤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
- ⑥ **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,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**

2. 정답 ②

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그러므로 산출세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

3. 정답 ④

- ① 주민세
  - 가. 균등분 및 재산분: 과세기준일(균등분:8월1일, 재산분:7월1일)
  - 나. 종업원분: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
- ② 담배소비세: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**반출(搬出)**하거나 국내로 **반입(搬入)**하는 때
- ③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: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·법인세를 **원천징수하는 때**

4. 정답 ②

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**납부기한**을 연장할 수 있다.

5. 정답 ③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**납기개시 5일 전**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.

-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.
-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,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.
- ③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,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.
- ④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(日割計算)하여 부과·징수하는 경우.

단,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(期分)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**신고납부**할 수 있다.

## 6. 정답 ④

- 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**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**하되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.
  - ㉠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.
  - 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(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)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.
- ② 등기,등록은 행위에 대한 과세이므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원에 의한 등기,등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형식적 요건만을 갖춘 등기,등록 또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.
- ③ 다음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**300**으로 한다.
  - 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(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
  - 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(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함에 따른 등기.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.

## 7. 정답 ①

1동(棟)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**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**으로 본다.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.

## 8. 정답 ④

지방소비세는 일반세이므로 목적외 용도를 정하지 않는다. 그러므로 지방세법상 목적세(지역

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)와 달리 일반목적에 사용가능하다.

9. 정답 ①

〈즉시해제사유〉

- ㉠ 납부, 총당, 공매의 중지, 부과의 취소,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
- ㉡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- 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

〈임의해제사유〉

- ㉠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(全額)을 현저히 초과할 때
- 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총당되었을 때
- ㉢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
- ㉣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
- ㉤ 압류한 금융재산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급여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수당,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할 때

10. 정답 ②

레저세의 과세대상

- ① 「경륜·경정법」에 따른 경륜 및 경정
- ② 「한국마사회법」에 따른 경마
- ③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11. 정답 ④

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**내국법인**을 말한다.

12. 정답 ④

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**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.**

## 13. 정답 ③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총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총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"지방세환급가산금"이라 한다)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.

- ① 착오납부,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: 그 납부일.
- ②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연세액(年稅額)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세액의 일할계산(日割計算)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: 소유권이전등록일·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
- ③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: 그 결정일
- ④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: 그 법률의 **시행일**
- ⑤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: 그 신고를 한 날(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)부터 30일이 지난 때.

## 14. 정답 ①

"지방세 특례"란 세율의 경감, 세액감면, 세액공제, 과세표준 공제(**중과세 배제,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**한다) 등을 말한다.

## 15. 정답 ③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**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**의 세율을 **가감할 수 없다**.

## 16. 정답 ②

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**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**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.

## 17. 정답 ①

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(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)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(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**법인격 없는 시단·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.** )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.

### 18. 정답 ②

사업의 양도·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**이전**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총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

### 19. 정답 ③

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**성립**된 소득·수익·재산·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**성립 후**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.

### 20. 정답 ②

#### 〈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사유〉

- ①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
- ③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
- ④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